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2021구합55500]

사 건 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 원고1 서울 마포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 수협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변호사3, 변호사4
변론 종결	: 2022. 3. 11.
판결 선고	: 2022. 4. 15.

주 문

1. 피고가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장의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0001061200 SUHYUP 2022-07-11 16:51:48

피고가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 ○○○(이하 '고인' 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 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고인의 사망

1) 고인은 피고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호(이하 '이 사건 선박' 이라 한다)에서 2019. 5. 21.경부터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2) 고인은 2019. 6. 1. 이 사건 선박에서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폐부종 등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3일 직접사인 '급성신손상, 대사성산증' 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 및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고인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0. 10. 8. 피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0. 11. 26. 고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에 해당하고 고인의 유족에는 원고 외에 배우자 ○○○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

000106 3200 SUHYUP 2022-07-11 16:51:46

에 상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합계 78,991,360원[=70,528,000원(고인의 승선평균임금 월 4,231,680원의 5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급여) + 8,463,360원(고인의 위 승선평균임금의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례비)]만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고인과 사실상 이혼한 상태로서 부양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인과 사회·경제적 공동체로 생활해왔고 고인의 장제를 지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의 1순위 수급권자이다. 그럼에도 ○○○에게 원고와 같은 순위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중 각 1/2 부분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 2001. 9. 25.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고인의 사망 이후인 2019. 6. 3. 발급된 고인의 혼인관계증명서, 2020. 5. 20. 발급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폐쇄)에 각 고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고인의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인의 가족은 ○○○과 원고뿐이었고, 고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0001061200 SUHYUP 2022-07-11 16:51:48

2) ○○○은 2001. 12. 7.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시 ○○면 ○○리 ○○-○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3. 11. 10.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및 재등록을 거쳐 2009. 7. 27. ○○시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로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고인은 2002. 10. 19. ○○경찰서에 '○○○이 2002. 8. 15. 가출하였다'는 내용의 가출인 신고를 접수하였다.

3) 고인은 2004년경부터 ○○○와 동거하다가 2013년경 헤어졌고, 이후 ○○○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다. 2014. 11. 27.을 기준으로 고인을 세대주로 하여 고인의 모 ○○○, ○○○, 원고가 각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었다.

4) 원고는 1999. 2. 2. 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시 ○○면 ○○리 ○○로 전입신고를 하고 고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6. 6. 14. ○○ ○○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18. 1. 26.부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원고의 국민건강보험자격은 2016. 2. 5. 지역세대원에서 직장가입자[까만안경(동부)]로 변동되었고, 2017. 9. 1. ○○○안경 ○○○○삼거리점, 2019. 2. 1. ○안경원으로 소속 사업장이 각 변경되었으며 이직기간 동안에는 지역세대주로 변동되었다.

5) 고인은 2017. 1. 24. ○○○시 ○○읍 ○○로 ○○○로 전입한 이후부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17. 1. 2.부터 사망 당시까지 총 280회에 걸쳐 ○○○해양경찰서 ○○파출소에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6) 고인에 대한 2019. 6. 4.자 화장증명서의 '신청인'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과 사용료 내역(50,000원)이 기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2 내지 14,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0001061260 SUHYUP 2022-07-11 16:51:48

라. 유족급여에 관한 판단

1) ○○○의 수급권자 지위에 관한 판단

가) 법률혼주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수급권을 갖는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이 2001. 9. 25.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위 법리와 같이 고인과 ○○○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거나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은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어선원재해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과 ○○○이 사이에 법률혼을 해소하기로 하는 이혼의사가 합치되었다거나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고인이 ○○○을 상대로, ○○○이 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② 갑 제 8 내지 10,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02년경 고인의 주소지를 떠나 그 무렵부터 고인과 별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경까지 ○○○와 동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과 ○○○이 별거에 이루게 된 이유와 경위, 별거 이후 고인과 ○○○의 관계

0001061200 SUHYUP 2022-07-11 16:51:48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이 2002. 8. 15.경 고인의 모 ○○○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인이 ○○○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 집을 나간 후 고인이 ○○○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인과 ○○○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이혼의사의 합치가 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은 2003년경부터 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주거를 두고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은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의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수급권자 지위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유지하는 등으로 고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2016경부터 고인은 ○○○시에, 원고는 ○○에 따로 주소를 두고 독립하여 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 소재 직장에서 스스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며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자녀'에 해당할 뿐,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와 ○○○은 각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므로 같은 순위로 유족보상을 받을

0001061200 SUHYUP 2022-07-11 16:51:46

수 있고(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이와 같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람의 수에 의하며 등분하여 유족보상을 지급하게 되므로(같은 조 제4항), 결국 고인에 대한 유족급여의 1/2씩을 각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유족급여(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70,528,000원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장례비 부분에 관한 판단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로 지급하고, 그러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위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받을 자격을 '장례를 지냈는지 여부'로 제한하는 의미임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인의 자녀인 원고가 고인을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를 맡아 한 것으로 인정되고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이 고인의 장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에서 정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장례비는 장례를 지낸 유족인 원고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례비(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인 8,463,360원의 지급을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0001061200 SUHYUP 2022-07-11 16:51:48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2, 판사3

0001061200 SUHYUP 2022-07-11 16:51:46